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승인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: 제2026-57호(2026. 7. 2.)
2. 점용·사용의 목적: 소형어선 인양기
3. 점용·사용의 장소: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411-25번지 지선 공유수면
4. 점용·사용의 면적(기간): 256㎡(2026. 7. 2. ~ 2031. 7. 1.)
5. 점용·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, 주소
 - 성 명: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
 - 주 소: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12

2026. 7. 2.

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